

‘국립진주박물관’ - ‘호남문화재연구원’ 간

업무협력 약정서

국립진주박물관(이하 ‘박물관’)과 호남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박물관과 연구원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제346호)’ 출토품의 연구 및 보존과 전시를 목적으로 상호지원 및 협력 한다.

제2조 (협력사업)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박물관은 연구원이 발굴한 출토품의 분석 및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 전시를 진행 한다.
2. 연구원은 출토품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주관하고 전시 등의 제반활동에 공동으로 협력한다.

제3조 (협력방안)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기관은 관련 부서 간 실무자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전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타 추가협력 및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본 협약안을 근거로 실무협의기구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4조 (홍보) 각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홍보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웹사이트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비밀보호) 각 기관은 업무협력 과정에서 상호 취득한 비밀과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외부에 발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협약기간)

1.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혹은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단, 협약 내용이 변경 혹은 해지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사업은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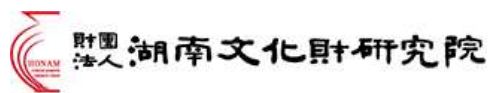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동 발생 시에도 협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8조 (일반사항)

1.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간의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3일



관 장 (서명)

원 장 (서명)